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9.1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주거복지기획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종수, 팀장 박희민, 주무관 이지은 ☎ (044) 201-3358, 3359
	공공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철흥, 사무관 김종욱 ☎ (044) 201-4580
보 도 일 시		2016년 9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 방송 인터넷은 9.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주거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

-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□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소득인정액*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**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.

*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(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)

*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
구분 \ 가구규모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중위소득의 50%	81.6	140.7	182.0	223.4	264.7

(* '17년 기준, 단위: 만원)

-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%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고,
-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* 입주자격을 부여한다.

* 현행 1순위는 생계·의료수급자(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% 이하) 등임

②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%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,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→4점으로 상향하여,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 가구가 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③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,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제도개선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,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것”으로,

○ “금년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·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박희민팀장(☎ 044-201-33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